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재난안전통신망법」(’21.12.9. 시행)에는 재난상황 보고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재난상황 최초보고 수단*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,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령 개정~~에 따라 새로 위임한 사항~~-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단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~~을~~-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
*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서면, 팩스, 전화 중 빠른 수단으로 재난상황을 최초보고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전화”를 “전화, 재난안전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제3호 중 “영 제75조의3제13항”을 “영 제75조의3제1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”을 “영 제75조의3제9항 및 제10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영 제75조의3제13항”을 “영 제75조의3제16항”으로, “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”을 “영 제75조의3제9항 및 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③ 영 제75조의3제13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등
2. 제1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재난·사고 원인조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조사의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
(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)

③ 영 제75조의3제13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등
2. 제1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재난·사고 원인조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조사의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

④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--영 제75조의3제16항-----

4. (생략)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⑤ 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4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영 제75조의3제9항 및 제10항-----

-----.

⑥ 영 제75조의3제16항-----

----- 영 제75조의3제9항 및 제10항-----

-----.

⑦ ----- 제6항-----

-----.